

第299回國會  
(臨時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2011年4月5日(火) 午前 10時

## 議事日程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對外經濟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1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26.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附議된案件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3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8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8
5.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8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0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0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0
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1.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1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13. 對外經濟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1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	12
16.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임동규 · 박대해 · 손범규 · 박준선 · 이은재 · 장제원 · 김영우 · 김혜성 · 조해진 의원 발의) .....	12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이석현 · 최영희 · 김재윤 · 박은수 · 강기정 · 원혜영 · 주승용 · 전해숙 · 홍재형 · 이성남 · 강창일 의원 발의) .....	13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3
1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이범래 · 이정선 · 주성영 · 배은희 · 박민식 · 손범규 · 박준선 · 강명순 · 정미경 · 김용태 의원 발의) .....	13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13
2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13
2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13
2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해훈 · 홍일표 · 구본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	13
2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해훈 · 홍일표 · 구본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	13
25.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
26.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
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김성태 · 나성린 · 박준선 · 유재중 · 이명규 · 이윤성 · 이진복 · 이한성 · 임동규 · 홍정욱 의원 발의) .....	15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 유승민 · 김광림 · 정해걸 · 이철우 · 김태환 · 박민식 · 박대해 · 최경희 · 이한성 · 이인기 의원 발의) .....	17

## 31.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제출) ..... 18

(10시06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박지원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이명박 정부 4년째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은 물가, 전·월세, 일자리, 구제역 등 4대 민생 대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고, 세계적 존경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신, 5공으로 회귀시켰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내세운 747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기업은 100조 원에 가까운 최대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온 것은 빚더미뿐입니다.

남북관계는 평화냐 전쟁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을 꿈꾸던 우리 민족이 또 다시 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무너지고 지방재정도 파탄 났습니다. 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가정 경제도 위기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4.7% 상승해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 값도 사상 최장인 176일 이상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생활 물가, 수입 물가 등 각종 물가지수가 모두 최고입니다.

전·월세 대란으로 전·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셋값은 101주째 계속 상승했고 월세 비중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중형아파트에서 소형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차례로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실업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850만, 실질 실업자 400만, 청년 실업자 100만 명이라는 암울한 결과뿐입니다. 수십 조 예산을 4대강 대운하에 쏟아 부은 결과로 대형 건설업자는 도움이 됐겠지만 일자리를 못 만드는 정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사회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습니다.

구제역과 AI에 대한 무능한 대책으로 소, 돼지 등 900만 마리의 가축을 생매장했고 사용된 예산이 3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주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무려 90%의 국민이 물가상승과 전세대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과 전세대란 정책에 대해 75%가 신뢰하지 못하고 81%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절망하는 현장에 대통령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반값 등록금 등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통합과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오천년 역사에 없었던 종교 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한 참회보다는 형식적인 수사로 어물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4년 전 태안 앞바다는 기름 유출로 죽음의 바

다가 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10시간이면 막을 수 있는데 방치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금 태안은 주민들이 자살하는 등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표를 받기 위한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정치와 선거, 국민과의 약속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공약은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이고 국민이 필요한 공약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국민의 70%, 4대 중단, 시민사회와 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4대강 운하 사업을 밀어붙인 것뿐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로 누가 뭐래도 국정은 파탄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실패한 국정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정 현안의 대책이 없거나 잘못된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전·월세 대란 초기에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핑계를 댔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대책은 없다’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70%가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확대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텐데 중대형 아파트 분양 중심으로 몰아갔습니다. DTI를 완화해서 ‘빛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것도 효과는 적으면서 가계부채만 대폭 늘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 MB 물가지수를 만들어 ‘물가를 잡겠다’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MB 물가지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국정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도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다’ 할 정도니 국민은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이렇듯 무책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둘째, 정책 타이밍의 오판입니다.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쳐 물가를 잡는 정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기름값은 최악의 상황까지 방치하다 기업을 압박해 ‘3개월간 100원 인하’라는 임시방편뿐이고, 유류세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특히 구제역 뒷북 대응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 미리 진단해 예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덮고 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정책을 실행할 시점을 잘 모릅니다.

셋째, 정책 혼선입니다.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DTI 정책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부의 혼선,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 등 모든 정책이 오락가락 혼란스럽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밀어붙이고 해야 할 일은 오락가락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인사입니다.

고소영·강부자 인사로 출발해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청와대·장관·공기업에 실패한 인물, 대선캠프 인사만 임명했습니다. 특히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금융계만은 전문가들을 임명했지만 지금 4대 금융지주사 회장은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실패한 인물들만 골라 썼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의 결과로 세계적 조롱거리인 상하이 스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노벨인사상감’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능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능과 실패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재보선, 정권 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마시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을 먼저 요구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사실상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진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서민 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는 데 혼신을 다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

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민은 주변 인물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기까지 자기희생과 읍참마속의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랐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BBK, 한상률 게이트 등을 보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짜 맞추기 수사로 더 큰 의혹과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지 판가름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간다면 우리 민주당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번 4월 국회를 국민을 위하는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물가 관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가 폭등의 원인인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예산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합니다. 말로만 친서민을 논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건졌으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적어도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를 즉각 이행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1년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이삼백 명의 대학생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22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열릴 정도로 절박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를

정부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대폭 지원 등 반값 등록금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전용기 고장에도 불구하고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은 방사능 오염에 불안할 때 정부는 문제가 없다며 사흘씩이나 검출 사실을 숨겼습니다. 정부는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된 고리 원전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1986년 체르노빌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40%에서 2030년까지 60%로 늘리고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 발전 의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 재앙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는 싸다고 하지만 원전 1기당 2조 5000억의 건설비용이 들어가고 이번 일본 사태에서 보듯 유사시 엄청난 사후처리와 복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자금을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등에 집중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이 신생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월 당정 협의에서 DTI 규제 원상회복, 취득세 추가 인하,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DTI 규제 원상회복은 환영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 인하는 반대합니다.

현재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취득세 추가 인하도 거래를 활성화한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수로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목을 매게 하는 몰염치한 꼼수입니다.

둘째, 지방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이를 지원할 대안은 불명확합니다. 취득세 인하는 법 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균형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취득세 추가 인하 이전에 법적인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개월 이상 축산농가에 절망을 안긴 구제역은 봄이 되면서 물러갔습니다. 구제역 대재앙은 방역 실패, 살처분 위주의 대응, 잘못된 매몰지 선정 등 총체적인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물러가겠다던 장관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살처분 보상금 축소와 차등 지급, 백신 접종비 농가 부담, 축산업 허가제 등 구제역으로 인한 부담을 축산농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가에 못 미치는 살처분 보상금과 그 보상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역 매몰지에서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지역민, 방역과 매몰 작업에 참가한 공무원과 작업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구제역 대재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역 대재앙은 연례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친서민 정책을 말한다면 노동문제의 핵심쟁점인 5대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5대 노동현안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무급휴

직,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전북버스 장기파업,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입니다.

모두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3권이 침해되고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해고와 구속은 물론 자살, 후유증에 의한 사망 등 가정이 파괴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 5대 노동현안특위 구성과 함께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합니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즉각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EU FTA는 민주당이 이미 작년 상반기에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부했습니다.

FTA 협정문에서 207곳에 번역 오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비준안을 세 번씩이나 국무회의에,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EU FTA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우리 양돈·낙농가, 제약업계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즉 선 대책 후 비준입니다.

국방개혁 역시 이명박 정부는 그 혼한 토론회와 공청회 한 번 없이 사병 복무기간 연장, 군의 과학화와 정예화 지연 등을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군 내·외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군 스스로 여론을 수렴해 만들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률까지 제정한 ‘국방개혁 2020’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해 7조 8000억 원이고 필요한 법정지출을 빼도 2조 230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작년 12월 8일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영부인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국 3500여 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이를 복원하자는 겁니다.

또한 현재의 추락하는 민생 경제 상황을 보면 반값 등록금 지원, 구제역 축산농가 지원,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시급합니다.

원래 추경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생 경제 상황은 이런 통상적인 예를 떠올릴 형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 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합니다.

북한의 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6자회담을 재개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핵이 소형·경량화 되면 세계적 재앙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북한의 당과 군, 주민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견제할 때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하루속히 열려야 합니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백두산 화산 폭발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800여 개의 우리 남북교역 업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유엔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43만 t의 식량을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도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안보위협만 부추기고 경기북부와 강원지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정부는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더 잘사는 우리가 북한이 내민 손을 잡아 줘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27일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심판을 하는 날입니다.

첫째 4대 국가위기, 둘째 4대 민생대란, 셋째 공약 뒤집기, 넷째 실패한 인사 등 이명박 정부

의 4대 실정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공천한 후보들은 이미 실패했거나 국민의 부적격 검증이 끝난 흘러간 인물들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원도지사후보는 일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언론인의 양심과 영혼을 판 한나라당 후보의 실체에 대해 강원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분당을 후보 공천은 짓대 없고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집권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분당을 후보 공천은 짓대 없고 최소한 자존심도 없는 집권 여당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패한 전직 총리를 영입하겠다고 했다가 오죽하면 보궐선거의 원인인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공천한다는 국민적 코미디까지 연출하겠습니까?

김해을 후보도 청문회를 통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낙마한 사람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천을 하는 것은 김해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심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4월 27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 즉 반값 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정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절대 필요한 정책이자 실행 가능한 약속으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설정해 정책 실행 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절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적극적인 내수 확장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양극화를 치유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으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해서 반값 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행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

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1년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였습니다. 이익을 볼 때 의를 생각하고 위기를 보면 목숨을 던지듯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였습니다.

때론 정부 여당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집시법 개정을 두 차례 저지해 1500여 명의 촛불 민주시민을 지켜냈고 골목상권 보호법을 끈질기게 협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로 총리와 감사원장, 장관 등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저지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영포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정권의 부도덕성을 파헤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야당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공한 집권 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대강 대운하 공사는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다 끝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와 준설, 시기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안 협상에서도 박희태 국회의장님, 김무성 원내대표님에게 타협안을 제시해 사실상 합의에 이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로 3년 연속 날치기라는 헌정 사상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고 예산 부수 법안도 아니고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까지 날치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국회의 끊임없는 노력이 청와대의 지시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밑알은 뿌렸다고 자부합니다.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 나가자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이 대통령께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라고 합니다.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하라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십시오.

민생과 남북문제 등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니다.

잠깐을 건디는 정책을 버리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펼치십시오.

생색내는 일은 멀리하시고 대통령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일에 매진하십시오.

이미 2000년 전 맹자께서는 민중군경(民重君輕)을 외치셨습니다. 백성의 뜻은 무겁고 군주의 자리는 가볍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저와 민주당의 고언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에 눈 감거나 몸 사리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1년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확인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만 믿고 국민 여러분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박지원 대표 마지막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7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한성**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문경 예천 출신 이한성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3건의 위원회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규칙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당해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기의 게양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국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점이 없어 대한민국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기의 게양 위치를 국기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0시5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길부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길부**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 위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산출금액의 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득세법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켜 신고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

대한 등록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부의장 정의화**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2인, 기권 17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2인, 기권 20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6인, 기권 14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藥材草生産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對外經濟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59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9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용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사항은, 첫째 ‘거시건전성부담금’이란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제도의 실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제한적인 개념인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장기외채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장기외채에 대한 부과요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였고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경영 여건이 취약해서 국내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의 재차입하고 있어 부담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요율 산정 시 지방은행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배려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부담금 부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환시장 안정과 위기 시 외화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운용방법을 보다 제한하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근거 법률로 외국환거래법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용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16.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임동규 · 박대해 · 손범규 · 박준선 · 이은재 ·**

**장제원 · 김영우 · 김혜성 · 조해진 의원 발의)**

(11시0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윤상현**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남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누락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이석현 · 최영희 · 김재운 · 박은수 · 강기정 · 원혜영 · 주승용 · 전해숙 · 홍재형 · 이성남 · 강창일 의원 발의)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이범래 · 이정선 · 주성영 · 배은희 · 박민식 · 손범규 · 박준선 · 강명순 · 정미경 · 김용태 의원 발의)

####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본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본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 2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강석호 · 한선교 · 이혜훈 · 홍일표 · 구본철 · 신상진 · 이정선 · 백성운 · 이종혁 · 나성린 · 이경재 · 이인기 의원 발의)

(11시12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7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양승조**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료기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치과기공사의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영희 의원·정미경 의원·이애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고,

둘째,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며,

셋째, 의료인이 품위 손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이 공개수색·수사체계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 김충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은 모두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기권 5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조원진 · 김성태 · 나성린 · 박준선 · 유재중 · 이명규 · 이운성 · 이진복 · 이한성 · 임동규 · 홍정욱 의원 발의)

(11시22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5항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신영수**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은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석면안전관리법안 등 2건의 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첫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석면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자연발생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석면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

**25.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정법률안(대안)은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환경감시관제도 도입 및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성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법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 범위에 환경산업을 추가하며,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산업협회를 법정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면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각 행정기관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출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 출입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도록 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도 특정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신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일 의원** 유원일 의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제31조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 강화 조문을 삭제하고 있는 이 조문은 이를 삭제하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폐기물소각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총량 규제의 심리적 또한 이론적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면 총량 규제도 무력화되고 또 다른 개별법으로 규제되는 이런 환경 규



제에 대해서 다량의, 한곳에 밀집해 있는 이런 환경 유발업체에 대해서 대기환경 규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영향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법에 근거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시화·반월공단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정 폐기물의 80%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환경소각시설에 단 한 곳만 하더라도 주민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것도 생활폐기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화·반월공단에는 7개의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개별법으로 규정한다면 이 소각장의 대기오염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개를 전부 합치고 시화·반월공단의 198개의 중형 소각로를 함께 합친다면 심각한 오염 수준입니다.

이 오염 수준을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을 이렇게 손쉽게 뜯어고친다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발상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환경에 대한 우리 현주소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법안들은 장려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없더라도 충분히 저공해 자동차를 권장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은 지정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총량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런 아주 나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기도 모자란 판에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건, 우리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를 오늘 이렇게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익과 침해하게 대립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환경운동을 했던 저로서는 치욕스럽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유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7인, 기권 44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장윤석·유승민·김광림·정해결·이철우·김태환·박민식·박대해·최경희·이한성·이인기 의원 발의)

(11시3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0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장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土海洋委員長代理 張倫碩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현행법이 도청 이전을 위한 개발에

정지구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도청 이전사업 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년 이내에는 도청 이전 예정지의 토지보상을 완결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토지 보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도청 이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장윤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5인, 반대1인, 기권 11인으로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장 제출)**

(11시3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1항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대리 이철우**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3월 30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동 결의안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일본 정부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승인을 엄중히 규탄함과 아울러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일본 정부의 왜곡된 독도영유권 주장 행위는 최근 한 단계 높아지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며,

셋째, 우리 정부가 계속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철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균현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서종표 유원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김 영 환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 일 호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이 균 현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회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제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배 은 희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서 중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재 희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흥 준	안 효 대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선 호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균 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이 용 섭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윤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이 은 재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홍 일 표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우 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황 진 하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성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순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선동 김세연

**기권 의원(4인)**

유기준 유원일 이용경 한기호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재희  
 전현희 전해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유원일

**기권 의원(1인)**

현기환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중표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경재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하균	정해결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22인)**

강창일	김기현	김상희	김영환
김춘진	노영민	박선숙	변재일
신건	안민석	안홍준	오제세
유성엽	이강래	이성남	이용경
이용섭	장세환	전병헌	정진섭
정희수	최종원		

**기권 의원(17인)**

김진애	박은수	백재현	송민순
유정현	이범래	이윤성	이종구
이철우	정범구	정옥임	정태근
조경태	조문환	최재성	추미애
현기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윤상현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하균  
 정해걸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종원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22인)**

강창일 김기현 김상희 김재균  
 김진애 김춘진 노영민 박선숙  
 변재일 서종표 신건 안홍준  
 오제세 유성엽 윤석용 이성남  
 이용경 이용섭 이종구 장세환  
 정진섭 정희수

**기권 의원(20인)**

김선동 김우남 김충환 김혜성  
 박은수 백재현 송민순 유기준  
 유정현 이미경 이범래 전병헌  
 정범구 정태근 조경태 조문환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현기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광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경재 이근현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애주 이윤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6인)**

강기정 강창일 권선택 김기현  
 김상희 김영환 김진애 김춘진  
 노영민 박선숙 변재일 서종표  
 신건 안홍준 오제세 유성엽  
 이강래 이성남 이용섭 장세환  
 전병헌 정미경 정장선 정진섭  
 정희수 최영희

**기권 의원(14인)**

김혜성 박은수 송민순 양승조  
 유정현 이범래 이종구 이화수  
 정범구 정태근 정해걸 조문환  
 최재성 현기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형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유승민 최경환

**기권 의원(4인)**

강승규 김성식 유기준 최연희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최 경 환

**기권 의원(5인)**

김 재 경 박 준 선 유 기 준 유 승 민  
 정 범 구

(조배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4인, 기권 의원 5인임)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희 철 나 경 원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회 상  
 박 근 혜 박 기 준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회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회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연 회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태 원 한 선 교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공 성 진  
 광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제	이군현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해결

○對外經濟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윤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윤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해훈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희수 조경태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승수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용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차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현 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인기 최경환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윤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윤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진삼  
 이한성 이해봉 이해훈 이한구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차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현 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나경원 박진 정옥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광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형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유성엽

기권 의원(3인)

김진애 이석현 최영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 유철	원 희목	유 기준	유 선호	김 재윤	김 정훈	김 진애	김 진표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유재중	윤상현	윤석용	윤영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진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구식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선교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허원제	허천형	현기환	홍사덕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황진하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형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1인)**

한기호

**기권 의원(1인)**

유정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성천 고홍길 권경석 권택기 김동성 김성곤 김성조 김소남 김영환 김을동 김정훈 김충조 김학송 김효석 노영민 박근혜 박보환 박종근 배영식 서병수 송영선 신지호 안경률 안홍준 오제세 유기준 유원일 윤상현 이강래 이명수 이상권 이애주 이은재 이재오 이주영 이철우 이혜훈 장세환 전현희 정의화 정하균 조승수 조진래  
 강기정 강승규 공성진 권선택 김금래 김무성 김성동 김성태 김영선 김용구 김재경 김진애 김충환 김학용 김희철 노철래 박기춘 박영아 박주선 배은희 서상기 송훈석 신학용 안규백 안효대 우윤근 유선호 유일호 윤석용 이근현 이범래 이용섭 이인기 이정선 이진복 이학재 이화수 장윤석 전혜숙 정세균 정장선 정해영 주광덕  
 강길부 강창일 광정숙 권성동 김기현 김부겸 김성수 김성회 김영우 김용태 김재균 김진표 김태원 김형오 나성린 문학진 박대해 박우순 박준선 백재현 서종표 신건심 대평수 안상수 양승조 원유철 유성엽 윤영 이낙연 이병석 이석현 이용희 이인제 이정현 이진삼 이한구 임동규 장제원 정갑윤 정수성 정진섭 조경태 조원진 주성영  
 강석호 고승덕 구상찬 권영길 김낙성 김선동 김성식 김세연 김영진 김유정 김재윤 김춘진 김태환 김혜성 남경필 문희상 박병석 박은수 박진 변재일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안형환 여상규 원희목 유승민 유정현 윤진식 이두아 이사철 이성남 이윤석 이재선 이종구 이찬열 이한성 장광근 전병헌 정두언 정옥임 정태근 조순형 조전혁 주승용

진성호 최규성 최재성 허원제 홍일표  
 진영 최병국 최종원 허천 홍재형  
 최경환 최연희 추미애 현기환 홍준표  
 최구식 최영희 한기호 홍사덕 황우여

**반대 의원(2인)**

이종혁 조문환

**기권 의원(5인)**

강명순 박영선 신영수 이경재  
 이용경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광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심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상수  
 심재철 안형환 양승조 여상규  
 안형환 안효대 양유철 원희목  
 오제세 우윤근 유성엽 유승민  
 유기준 유선호 유재중 유정현  
 유원일 윤석용 윤영 윤진식  
 윤상현 이강래 이명수 이상권  
 이애주 이은재 이재오 이주영  
 이철우 이혜훈 장세환 전현희  
 정의화 정하균 조승수 조진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선호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진식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상권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정해걸	조정태	조문환	조순형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주광덕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이찬열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정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최종원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기권 의원(4인)

송영선	정해걸	최경희	추미애
-----	-----	-----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운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금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운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현
정 하 균	정 해 결	조 경 태	조 문 환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낙 연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병 석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남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최 중 원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체	이 재 선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이 찬 열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봉

**기권 의원(2인)**

박 상 은 이 화 수

(송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7인, 기권 의원 2인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름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기권 의원(5인)**

박 병 석 신 건 안 형 환 유 재 중  
이 윤 석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기권 의원(1인)**

박준선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옥 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낙 연
정 하 균	정 해 결	조 경 태	조 문 환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병 석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성 남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최 종 원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홍 정 옥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기권 의원(3인)

유 기 준 이 한 구 전 병 현  
(김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12인, 찬성 의원 209인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중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구	이 중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진 병 현	진 현 희	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입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최 중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유 성 엽 이 용 경 최 병 국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1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홍 길	공 성 진
구 상 찬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희 철	나 경 원	나 성 린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재 현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안 경 룰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중 구	이 중 혁	이 주 영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현 희	정 두 언
정 옥 입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하 균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정 옥	홍 준 표	황 우 여	

**반대 의원(37인)**

강 기 정	강 창 일	권 선 택	김 부 겹
김 영 진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노 영 민
박 병 석	박 우 순	박 은 수	변 재 일
서 종 표	신 건	신 학 용	안 홍 준
오 제 세	유 성 엽	유 원 일	이 강 래
이 낙 연	이 성 남	이 인 기	장 세 환
정 미 경	정 장 선	조 경 태	주 승 용
최 경 희	최 규 성	최 영 희	최 중 원
한 기 호			

**기권 의원(44인)**

강 기 갑 광 정 숙 권 영 길 권 택 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김낙성	김성식	김을동	김충조
김혜성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배영식	서병수
송영선	송훈석	심대평	심재철
안규백	우윤근	유재중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진복	이한구
이해봉	전병헌	정갑윤	정세균
정수성	정태근	정해걸	주광덕
최연희	추미애	홍일표	홍희덕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최영희	최종원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기권 의원(3인)

김정훈 조문환 추미애  
(송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3인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태	김성희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영수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경을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김용태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김창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애주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심대평	심재철	안경을	안규백
전병헌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옥임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조영택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최경환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최연희	최종원	한기호	허원제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황진하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반대 의원(1인)**

최영희

**기권 의원(11인)**

김성식	김세연	박근혜	서종표
신건	심재철	이성남	이한구
조원진	주승용	추미애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황 우 여    황 진 하  
 (이재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최연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98인, 찬성 의원 198인, 기권 의원 없음)

○출석 의원(27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김 희 철	나 경 원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박 회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응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체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허 원 제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태 열	현 기 환
홍 정 옥	홍 준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진 하		홍 회 덕	황 우 여

○개의 시 재석 의원(21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진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효 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남경필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권영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박진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박보환	박상은	박영선	박영아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윤영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박희태
윤진식	이경제	이균현	이낙연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이두아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이희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현희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경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영택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조해진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이철우	이춘석	이진삼	이찬열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규성	이해봉	이혜훈	이한구	이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장광근	장세환	이화수	임동규
최재성	최종원	한기호	한선교	전병현	전재희	장윤석	장제원
허원제	허천형	현기환	홍사덕	정두언	정미경	전현희	정갑윤
홍영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	정옥임	정의화	정세균	정수성
황진하				정태근	정하균	정장선	정진섭

○산회 시 재석 의원(21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조문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주호영	진성호	차명진	최경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중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청가 의원(11인)

성 윤 환	송 광 호	윤 상 일	이 범 관
이 영 애	이 종 결	이 춘 식	장 병 완
진 여 욱	정 동 영	황 영 철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권 오 을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사 무 차 장	구 회 권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윤 증 현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이 주 호
통 일 부 장 관	현 인 택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국 방 부 장 관	김 관 진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맹 형 규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장 관	유 정 복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최 중 경
환 경 부 장 관	이 만 의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박 재 완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백 희 영
특 임 장 관	이 재 오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 석 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모 철 민
보건복지부차관	최 원 영
국토해양부제2차관	김 희 국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10회계연도(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결산서**

(2011. 3. 29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제출)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11. 4. 4 이용섭·박선숙·장병완·양승조·전혜숙·조영택·박주선·송민순·강기정·김영진·강창일·김재균 의원 발의)

4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정진섭·이화수·김효재·나성린·심재철·이종구·장광근·박보환·노철래·배은희·박상은·백성운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이진삼·이명수·임영호·김창수·이상민·김용구·김충환·권선택·정갑윤·박선영·유기준·이성현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박기춘·주광덕·이윤석·김성곤·배영식·유성엽·최규성·권영진·이찬열·전현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정진섭·이화수·김효재·나성린·심재철·이종구·장광근·박보환·노철래·배은희·박상은·백성운 의원 발의)

4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1. 4. 4 박은수·주승용·백원우·장병완·추미애·양승조·김상희·강창일·변재일·이미경·김재균·최영희 의원 발의)

4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2011. 4. 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1. 4. 4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4. 4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4. 4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1. 4. 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2011. 4. 4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對外經濟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0. 12. 30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1. 1. 26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0. 10. 1 정부 제출)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0 안효대·임동규·박대해·손범규·박준선·이은재·장제원·김영우·김혜성·조해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8. 12. 4 신상진·임동규·김성태·손숙미·김충조·정영희·원희룡·백성운·남경필·이시종·안상수 의원 발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윤상현·공성진·구상찬·김성태·박선영·박준선·신지호·유기준·이경재·이성현·조진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강석호·한선교·이혜훈·홍일표·구본철·신상진·이정선·백성운·이종혁·나성린·이경재·이인기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8. 19 김충환·강석호·한선교·이혜훈·홍일표·구본철·신상진·이정선·백성운·이종혁·나성린·이경재·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4 이범래·이정선·주성영·배은희·박민식·손범규·박준선·강명순·정미경·김용태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0. 6. 11 양승조·이석현·최영희·김재윤·박은수·강기정·원혜영·주승용·전혜숙·홍재형·이성남·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09. 7. 30 이애주·유성엽·임동규·정옥임·

황우여 · 이인기 · 이한성 · 안형환 · 임두성 · 조진래 · 김규래 · 김성수 · 김학용 · 유정현 · 유재중 · 강명순 · 손숙미 · 이정선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9. 11. 6 정미경 · 정두언 · 손숙미 · 강석호 · 박준선 · 임동규 · 김광림 · 유기준 · 이애주 · 유재중 · 강승규 · 신성범 · 장제원 · 박보환 · 김선동 · 원희목 · 이해봉 · 강명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09. 9. 25 최영희 · 전해숙 · 송민순 · 장세환 · 양승조 · 전현희 · 백원우 · 이미경 · 송영길 · 박은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1. 1. 3 양승조 · 이낙연 · 박은수 · 이찬열 · 이성남 · 오제세 · 변재일 · 최영희 · 이종걸 · 장병완 · 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09. 8. 31 조원진 · 김성태 · 나성린 · 박준선 · 유재중 · 이명규 · 이윤성 · 이진복 · 이한성 · 임동규 · 홍정욱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석면안전관리법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10. 12 정부 제출)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  
(2009. 12. 9 김충조 · 강창일 · 원희룡 · 이명수 · 유성엽 · 양승조 · 정영희 · 박주선 · 김영진 · 김부겸 · 최규식 · 박기춘 · 강기정 · 김유정 · 정양석 의원 발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2009. 9. 18 이성현 · 김정권 · 신학용 · 이인기 · 유성엽 · 임두성 · 송영선 · 이한성 · 김성태 · 구상찬 · 김효재 · 손범규 · 한선교 의원 발의)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0. 9 정부 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09. 7. 24 강성천 · 김성태 · 이한성 · 이정선 · 김장수 · 김옥이 · 강석호 · 현기환 · 김소남 · 이경재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강성천 · 김성태 · 박준선 · 조원진 · 김옥이 · 강석호 · 이한성 · 이화수 · 정미경 · 임동규 · 이정선 의원 발의)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0. 10. 11 장윤석 · 유승민 · 김광림 · 정해걸 · 이철우 · 김태환 · 박민식 · 박대해 · 최경희 · 이한성 · 이인기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2009. 4. 1 이해봉 · 손범규 · 유승민 · 이성현 · 김창수 · 안상수 · 조원진 · 김종률 · 김성태 · 정해걸 · 진성호 · 김효재 · 김용구 · 서상기 · 조진래 · 조문환 · 주호영 · 홍사덕 · 주성영 · 김옥이 · 여상규 · 강석호 · 김충환 · 이명규 · 김성수 · 김성곤 · 현기환 · 허천 · 이한구 · 이철우 · 장광근 · 성윤환 · 정의화 · 이정선 · 김성조 · 권영진 · 박종근 · 이한성 · 서청원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9. 4. 10 최구식 · 진성호 · 주호영 · 유승민 · 김정권 · 이인기 · 안상수 · 손범규 · 김재윤 · 안홍준 · 신영수 · 강석호 · 김충환 · 유성엽 · 성윤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6. 10 임동규 · 이명규 · 고승덕 · 김성조 · 신상진 · 차명진 · 김기현 · 유성엽 · 강석호 · 김성태 · 김정훈 · 신영수 · 이인기 · 이한성 · 안홍준 · 백성운 · 배은희 · 권영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범도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8 허범도 · 고승덕 · 이성현 · 이한성 ·  
임동규 · 이화수 · 안효대 · 박선영 · 공성진 ·  
김금래 · 허태열 · 김성희 · 김정훈 · 이종구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2009. 6. 30 김정훈 · 손범규 · 신성범 · 원희목 ·  
안효대 · 신지호 · 성윤환 · 정미경 · 안상수 ·  
현기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10. 16 권경석 · 조진형 · 김성조 · 원유철 ·  
정갑윤 · 최인기 · 이은재 · 이명수 · 김태원 ·  
최규식 · 신지호 · 장제원 · 유정현 · 김소남 ·  
정수성 · 안경률 · 김충조 · 이범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9 정희수 · 송영선 · 윤영 · 정해걸 ·  
손범규 · 정병국 · 이해봉 · 이화수 · 임두성 ·  
조문환 · 이인기 · 허천 · 이명수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0. 6. 28 윤영 · 장광근 · 윤석용 · 정희수 ·  
안효대 · 김낙성 · 권경석 · 김동철 · 노철래 ·  
장제원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0. 1. 5 장제원 · 유성엽 · 조영택 · 김춘진 ·  
김정권 · 정해걸 · 이명수 · 안형환 · 이은재 ·  
안효대 · 송훈석 · 이한성 · 이인기 · 이화수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  
발의)

(2009. 9. 7 정진섭 · 노철래 · 이진복 · 박민식 ·  
김세연 · 김효재 · 김무성 · 안효대 · 정희수 ·  
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11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해외망명자에 관한 질문서**

(2011. 4. 4 강용석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건강식품 및 식품의 수입, 통관절차 개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1. 4. 4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